



인천공항세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안내

- 평소 관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관련업체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, 그 결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.
- 그러나 국회 및 언론 등에서는 아직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이 미흡하고,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특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특송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활성화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('15.2.6까지 계도기간)에 따른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-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사전에 관련 해외전자상거래 업체에 동 사실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아 래 >

- 가.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(신고인)별 검사율 차등적용('14.12.1. 시행)
-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(12월은 11.20~30) 따라 검사선별
- 나.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('15.1분기 평가시 시행)
- 10점(가점포함) ~ -5점(감점) 까지 차등적용
- 다.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('15.1.1. 시행)
- 라.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('15.2.1. 시행)
- 마.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(주민번호 사용 금지)('15.3.1. 시행)
-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
- ※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. 끝.

인천공항세관장



수신자 관내 특송업체, 한국관세사회인천공항지부

관세행정관 권광욱

관세행정관 김재석

특송통관1과 전결 2014. 11. 12.
장 김수원

협조자

시행 특송통관1과-5159 (2014. 11. 12.) 접수

우 689-89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공항세관 / www.customs.go.kr/airport

전화번호 032-722-4323 팩스번호 032-722-4339 / phil@customs.go.kr / 비공개(5)
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